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24호
- 나. 제 출 자 : 엄셋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사.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아.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표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16조).

4. 관계법령

- 가. 「교육기본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 나. 「평생교육법」 제4조, 제5조
- 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제5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민주시민교육은 서울, 부산 등 10개 광역자치단체, 21개 기초지자체, 9개 교육청 등에서 조례 제정·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현황〉

광역자치단체명	조례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4.01.0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01.0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02.2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02.15
충청북도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11.14
충청남도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08.0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8.04.10
경기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5.10.13
전라북도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3.25
전라남도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8

-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균형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 법령 1부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